

##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황재홍\*\* · 조필규\*\*\*

### 요약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를 통합하려는 자유주의 최근 조류이다. 이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도덕적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론을 수용하면서도, 이는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된다면,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이 만족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 자유로 격상시키는 것은 사실상 효율성 주장으로 환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의 가치가 자율적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도덕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인식될 수 있다면,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주제분류 : B030102

핵심 주제어 : 신고전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 사회정의, 시장민주주의

## I. 서론

전통적으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는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왔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3799).

\*\* 제1저자, 목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zootjhong@hanmail.net

\*\*\* 교신저자,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e-mail: jopk@hanbat.ac.kr

다. 그러나 최근 토마시(J. Tomasi), 니켈(J. Nickel) 등과 같은 일부의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주장을 수용하는 한편 평등주의적 자유주의(egalitarian liberalism)의 사회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입장을 수용하면서 양자가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Tomasi, 2012a; 2012b; Brennan and Tomasi, 2012). 이들 주장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를 정당화하면서 사회정의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전통 내의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흐름은 신고전적 자유주의(neoclassical liberalism)라 불리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핵심 쟁점 역시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 혹은 경제적 민주주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은 현실에서 대기업 규제(경제력 집중)나 노사관계(작업장 민주주의) 등의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드러나곤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기업의 의사결정 통제권을 노동자(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넘기면 재산 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경영자에 비해 종업원의 전문적 경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민주주의나 평등의 원리를 요구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시장 시스템을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 개입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한다(신석훈, 2012).

반면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 이들은, 국가 통치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기업 통치에서도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노동자(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적 영역에서 경제주체들 간에 보다 공정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하청 관계에서 대기업의 횡포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나아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민주적 노사 관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이 정의의 원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정치의 영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고전적 자유주의 역시 자신의 정의이론은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도덕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는,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자율적 인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무모한 시도로 여겨질 수 있으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요구는 상류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하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간 경제 주체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의 개입이 다시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관계를 재조명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 한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邊衡尹, 1988; 이제민, 1994; 조우현, 1994; 신광식, 1996; 김상조, 2012 등). 그런데 이들 연구가 주로 경제민주화의 현실적 과제, 예컨대 재벌정책이나 노사관계 등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경제민주화의 철학적,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홍훈(1994) 등을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논의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세 가치가 각각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면서도 때로는 상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희생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홍훈, 1994). 따라서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양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소위 시장민주주의(market democracy)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논자인 토마시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시장민주주의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논쟁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시장민주주의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Ⅱ장과 제Ⅲ장은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제Ⅱ장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정리하는 한편,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비판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기본적 자유로 격상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제Ⅳ장과 제Ⅴ장은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제Ⅳ장은 시장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정책과 제도상의 함의를 검토하는 한편, 그 한계를 규명한다. 이어서 제Ⅴ장은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사회정의와 통합시키려는 시장민주주의가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Ⅱ. 경제적 자유

토마시 등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자유주의 전통을 크게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구분한다(Tomasi, 2012a; Brennan and Tomasi, 2012). 아담 스미스(A. Smith), 흄(D. Hume), 하이에크(F. A. Hayek) 등으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적인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 이에 비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형식적 평등이라는 개념에 기초해 있는 것과 달리, 평등이라는 개념을 실체적인 도덕적 이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sup>1)</sup> 여기에는 롤즈(J. Rawls), 드워킨(R. Dworkin), 프리만(S. Freeman) 등이 속한다. 이들은 사회정의를 제도평가의 궁극적 기준으로 승인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적인 경제적 자유를 부차적인 지위로 격하시킨다.

1) 토마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신 high liberalis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프리만(S. Freeman)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간과되어 온 평등이라는 도덕적 이상의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칭한다(Tomasi, 2012a). 그러나 이 용어는 이전의 자유주의보다 더 도덕적으로 진보했다는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류에 속하는 논자들은, 본문에서 열거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위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하에서는 토마시 등의 이러한 분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통합을 시도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에 대한 두 입장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해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사회정의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 1.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대부분의 자유주의는 어떤 권리와 자유가 다른 권리와 자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한 권리는, 예컨대 정치적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고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권을 구성한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는 어떠한 권리가 기본권으로 정의되어야 하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적 자유에 대한 입장이다.

자유는 흔히 권리 관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는 일종의 청구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때 권리 보유자는 어떤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는 크게 독립적인 경제 활동에 대한 권리와 자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수반한다. 이때 전자는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Nickel, 2000)”, 즉 노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개인적 목적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자산을 획득,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의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판매를 위해 생산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개인적, 생산적 목적을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정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자유로 간주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흔히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로 불린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자유는 강제의 부재로서의 자유, 즉 개인이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 강제되지 않는 상태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Hayek, 1960). 만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그것

은 필연적으로 홉스의 전쟁상태(Hobbesian warfare)로 귀결된다.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간섭과 강제, 즉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Hayek, 1988).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자유 영역은 보장되어야 하며, 개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큼은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주의에서 그러한 영역이 바로 기본권을 구성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이때 경제적 자유, 특히 사유재산권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정의하는 기본권의 핵심이다. 자유주의 전통에서 사유재산권은 자기소유(self-ownership)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로크(J. Locke)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개인의 완전한 소유라는 관념에서 출발하여 노동에 의한 사유재산의 발생을 설명하였다. 즉 노동은 자신의 일부가 합해진 것으로서 공유물이었던 자연은 노동을 통해 자신의 일부가 되고, 따라서 이렇게 소유된 재산은 자신의 신체처럼 타인이 침해할 수 없다는 배타적 재산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것이다(Tomasi, 2012a). 즉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노동이 합해짐으로써 자연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된다. 이처럼 로크는 국가의 법을 넘어서는 자연권의 확립으로부터 사유재산권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재산권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호해야만 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개인을 외적 강제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적 영역의 설정에 있어서 필수적 조건이 된다(Hayek, 1960). 이처럼 로크 이후 자유주의 전통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야말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한 자유의 가치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이에크는 자유의 필요성을 불확실성과 구조적 무지, 즉 인간 이성의 한계로부터 도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자신보다 더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어떤 누군가가, 예를 들어 중앙의 어떤 계획자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면 이는 그 개인을 나쁜 상태로 몰아넣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타인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개인에게 의사결정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보다 더 나쁜 상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이에크는 자유의 문제를 지식의 활용문제와 밀접히 연관시키면서 자유를 구조적 무지에 대처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Hayek, 1976).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의 자유주의는 도구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밀(J. S. Mill)은 경제적 자유를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다르게 간주하고 있다. 노동과 소유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그들의 삶에서 자유와 어떤 본질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경제 법률들이 재화의 생산을 지배하는 반면 그 재화들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집단적 선택과 통제에 의존한다. 경제적 활동은 자유의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과 소유에 대한 권리는 공리라는 요건에 의해서 정의된다(Mill, 1996). 경제적 자유에 대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롤즈(J. Rawls) 등으로 대표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할 때 기본권을 다소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적인 자유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도덕적 능력(moral power)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유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에게 어떤 자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 개인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없다면, 이들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가 된다. 여기에서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은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정의관에 대한 역량, 즉 사회적 협조의 공정한 조건을 상술하는 정치적 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두 번째는 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Rawls, 1996, 2001).

이와 관련하여 롤즈는 두 가지 ‘근본적 경우(fundamental cases)’를 언급하고 있다. 각 경우는 도덕적 능력 각각에 관련된다. 첫 번째 경우는 정의관과 관련하여 정의 원리를 사회적 기본 구조와 정책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경우에 사상의 자유, 평등한 정치적 자유 등이 공적 이성(public reason)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해 요구된다. 두 번째 경우는 선의 개념에 대한 능력과 관련하여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고 합리적으로 추구함에 있어서

2) 이 때문에 토마시는 특이하게 밀을 고전적 자유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Tomasi, 2012a 참조).

시민들의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에 대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다. 시민들의 실천 이성 행사를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이 요구된다(Rawls, 2001, pp.112-113).

롤즈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에 필요한 자유, 즉 위 두 가지 근본적 경우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자유 역시 기본적 자유가 된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personal property) 소유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Rawls, 2001). 결국 롤즈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의 역할은 시민들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다. 즉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본질적인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들 중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기본적 자유를 구성한다는 데에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 자유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인간의 기본적 자유로 간주하는 데에 비해서 롤즈는 경제적 자유 중 극히 제한적인, 즉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Rawls, 2001). 즉 롤즈는 위 두 가지의 경제적 자유를 제외한, 예컨대 생산수단의 소유와 같은 다른 경제적 자유는 개인들이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economic exceptionalism)를 주장한다.

그러나 롤즈는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 다시 말해서 왜 다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살펴볼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토마시의 비판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롤즈는 민주적 사회와 시민이라는 이상으로부터 좁은 범위의 경제적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 2. 경제적 예외주의 비판

소극적 자유는 강제 부재이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기본적 자유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강제가 항상 부당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에게 중요한 것은 강제가 도덕적으로 정당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토마시에 따르면, 로크 이후 자유주의는 강제를 정당화함에 있어서 동의(consent) 혹은 정당화 가능성(justifiability)이라는 개념에 중요성을 부여했다(Gaus, 2010; Tomasi, 2012b). 강제가 그것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승인할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사용될 때에만 그 강제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이라는 것이다(Gaus, 2010; Tomasi, 2012b). 한편 롤즈에 따르면, 정당한 정치적 권위에는 헌법이 필요한데, 이때 그 헌법의 요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주체로서의 모든 시민들이 자신들의 공통의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승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awls, 2001).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 원리가 어떠한 조건에서 만족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토마시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치적 규칙 체계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칙 체계를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여기에서 토마시는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한다(Tomasi, 2012a). 즉 정치적 규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다음의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첫째,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self-authorship)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는 삶의 대안들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의 과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도덕적 능력이 없다면, 시민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둘째, 시민들은 자신들의 동료들 자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는 도덕적 능력이 요구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만 그들은 사회적 행위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 사람들이 사회의 행위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러한 두 가지 도덕적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만 한다(Tomasi, 2012a). 그리고 바로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가 기본적 자유

라는 데에 토마시는 롤즈에 동의한다.

따라서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이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자유는 어떠한 자유주의 체계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즉 기본적 자유의 보호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목표에 우선한다. 그리고 기본적 자유에 부여된 이러한 우선성은 중요한 제도적 함의를 갖는다. 기본적 자유가 정치적 정당성의 요건이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가 헌법 내에 뿌리박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에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역시 동의한다. 기본적 자유는 민주적 권위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입법 행위도 부당하며, 사회적 목적은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위배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토마시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경제적 자유 역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즉 롤즈가 말하는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요구되며,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개인적인 자산 소유권 이상의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만 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Tomasi, 2012a, 2012b).

롤즈에게 기본적 자유는 시민들이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자유들이다. 이에 따라 노동의 자유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그리고 소유의 자유에서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의 자유만이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고, 그 외의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된다. 이에 대해서 토마시는 롤즈가 경제적 예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덕적 추론은 왜 다른 경제적 자유들은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Tomasi, 2012b). 나아가 그는 경제적 예외주의의 근거들은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더 폭 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롤즈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예로 들어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가 시민들을 필요한 부문으로 자의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 존중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중에서 많은 시간을 직업

적 활동에 종사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Tomasi, 2012a). 즉 직업의 선택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왜 다른 노동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서 배제되어야만 하는지가 모호해진다. 이는 토마시의 문제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의 자유란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조건하에서 자신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생산적 활동에 자신의 신체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마시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개인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에 본질적인 것이라면, 자신의 노동력을 거래하거나 기부하는 자유 역시 동일한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질적이어야 한다(Tomasi, 2012b).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추구하는가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정의된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들의 능력을 훼손한다(Tomasi, 2012a). 즉 노동의 자유가 더 폭 넓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그들 자신의 손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한 의사결정권이 부정되는 조건하에서는 시민들의 평가적 지평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설사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제약을 묵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규칙을 승인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갖지 못한다(Tomasi, 2012b). 따라서 토마시의 결론은 생산에서의 노동의 자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도록 하는 데에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토마시는 동일한 논리를 소유의 자유에도 적용한다(Tomasi, 2012b). 롤즈는 개인적인 자산 소유만을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한다. 여기에서 개인적인 자산이란 일상적인 소비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개인적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들 자산은 결코 누구도 자신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개인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 이로부터 개인들은 타인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자산소유는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토마시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에 대한 권리 역시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Tomasi, 2012b). 예컨대 주식이나 채권 등의 형태로 저축된 생산적 자산은 개인과 가족들에게 독립적 주체로 생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안전을 제공한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단지 기업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는 통상적인 근로 계층 사람들을 국가 권력에 대한 강제적 의존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제공하는 독립과 안전은 단지 일부 계층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그러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그러한 편익은 시민들의 공통의 경험이다.

또한 토마시에 따르면, 생산적 자산의 소유는 단지 사람들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시민들이 자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Tomasi, 2012b). 생산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 모습을 비교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는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 롤즈의 표현처럼,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열망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로 존중받아야만 한다(롤즈, 2003).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의 관점에서 그들 자신의 삶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권과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어야만 한다(Tomasi, 2012b). 따라서 토마시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보호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토마시 등은 롤즈가 기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였다고 비판한다(Tomasi, 2012b; Brennan and Tomasi, 2012). 이에 따르면, 롤즈는 경제적 자유가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의 개발과 행사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사유재산권이 다른 자유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롤즈의 경제적 예외주의는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이로부터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폭넓게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Tomasi, 2012a, 2012b; Brennan and Tomasi, 2012).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적 계획을 부정하거나 제약하는 사회는 시민들이 책임 있고 독립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량을 훼손시킨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고용조건을 협상하거나 생산적 자산 소유를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계산하에 두는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는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를 저해한다. 개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노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자존감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퇴 이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저축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최저 임금이 수용가능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어떠한 의료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면, 그들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이처럼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자아존중에 대한 기본적인 자유주의적 관심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Brennan and Tomasi, 2012). 롤즈에 따르면, 자아존중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다(롤즈, 2003). 이와 관련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수단이 주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지 물질적 수단의 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지 않다면, 자아존중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있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기 삶의 주체로 간주하는 데에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Tomasi, 2012b).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존중이 종교, 결사,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에 대한 존중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정당성 요건으로서, 그리고 모든 시민 계층들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존중을 위해

서 폭 넓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자유주의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 중의 하나라고 해서 이러한 모든 권리가 모든 시민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가 되는 데에 동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수의 자산 보유자들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계발하는 데에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자유나 종교의 자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도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이들 권리를 전체 권리 체계의 구성요소로서 간주해야만 한다. 기본권은 시민들이 좋은 삶에 대한 누군가의 견해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삶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Tomasi, 2012b).

요컨대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결론은 정치적 자유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평가적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경제적 자유가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술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계발하고 그들이 동료 시민들 역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존중할 수 있는 조건을 상술해야만 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사적인 경제적 자유는 시민들이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정당화는 방식은 오히려 롤즈의 도덕적 추론에 기초하고 있다. 결과주의 혹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의 가치를 주장하거나 자기소유라는 관념에 기초해서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적 자유를 정당화하기보다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의 발전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라는 개념은 칸트(I. Kant)의 자율성(autonomy)이라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로크보다는 칸트에 가깝다(Tomasi, 2012b; Brennan and Tomasi, 2012). 많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재산권을 로크의 자기소유에 기초를

둔다. 이러한 접근에서 재산권은 개인과 사물과의 관계로 출현한다. 재산권은 자신의 노동을 소유되지 않은 대상과의 결합시키는 자기소유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경제적 자유를 자기소유에 기초하여 정당화하기보다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책임 있는 자기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칸트적인 도덕적 이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칸트에게도 재산권은 시민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지만 그에서 재산권은 개인과 사물의 관계보다는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들 간의 관계로 출현한다. 권리는 동료의 자기 주체로서의 역량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경제적 문제와 관련되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경제적 선택 역량을 제한하는 것은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 Ⅲ. 사회정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또 하나의 차이는 사회정의에 대한 입장이다. 예컨대 하이에크는 사회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강력히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정의라는 개념은 주로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로 표현되는데, 이는 자생적인 사회질서에는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정의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것은 개인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로운 사회는 인간행동의 결과이지만 의도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생적인 질서이고, 따라서 자생적 시장질서에서의 분배 결과를 놓고 보수의 차이가 정의롭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서는 유의미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의 의도한 결과를 놓고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의도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의도한 것도, 예측한 것도 아니며 어느 누구에게도 그 전부가 알려져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이다(Hayek, 1976).

반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롤즈에 따르면, 사회정의는 제도평가의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정의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결과에 적용되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최대의 평등한 자유 원칙으로서 이는 “각자는 타인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본적 권리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a)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직책과 결부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롤즈, 2003). 이러한 롤즈의 정의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한에서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회제도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그 편익이 집중되도록 설계되었다면, 해당 제도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따르면,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민들의 형식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당성은 시민들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조우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는 시민들에 대한 결과라는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때 사회정의는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는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사회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토마시는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언급한다(Tomasi, 2012b). 강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원리에 따르면, 정치적 강제는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인될 수 있는 원칙에 기초할 때에만 그 사용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정치적 권위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헌법은 모든 시민들의 승인을 요체로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민주적 정당화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을 전제로 한다. 롤즈에 따르면, 기본권으로서의 자유의 역할은 이러한 도덕적 능력을 보호하는 것이며, 토마시가 보기에 이러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사회정의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하고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사회안전망과 같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 개인들의 도덕적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국가는 시민들의 도덕적 삶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물론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 안에서도 사회정의에 대한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담 스미스의 중상주의 비판은 근로 빈민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부는 단지 총생산물의 관점이 아닌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라는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다. 또한 고전적 자유주의가 일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교육과 의료 등 기초적인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지원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그 범위는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고전적 자유주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비해서 토마시는 사회보장이 원칙적인 합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책임 있는 삶의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지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극단적인 궁핍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국가는 시민들의 도덕적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Tomasi, 2012b).

흥미로운 것은 토마시가 롤즈의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라는 관점에서 롤즈의 경제적 예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번에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롤즈의 사회정의에 대한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회정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시장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법론상에서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서 잘 드러난다.

소극적 자유가 강제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지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자유는 단지 자유일 뿐, 이는 권력 혹은 능력과는 다르다. 적극적 자유는 사실 능력에 대한 문제이지 진정한 자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라는 말을 용인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이 시민들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Hayek, 1960). 반면에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를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서 토마시 등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적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Tomasi, 2012; Brennan and Tomasi, 2012). 그러나 적극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하는 모든 방법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적극적 자유는 시장을 통해서, 즉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데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동의한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성장에 힘입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거 소수의 특권 계층보다도 더 많은 적극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생적인 시장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 자유에 필요한 유인과 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자유가 반드시 소극적 자유를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극적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Schmidtz and Brennan, 2010).

정부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법률적 보장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하이에크의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가 사회정의에 대한 반대와 동일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토마시는 사회정의가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도덕적 근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한다. 이때 토마시는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 과정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극적 자유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극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시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때 모든 시민들의 적극

적 자유를 촉진하는 경제적, 문화적 진보가 가능하며, 그 성과는 모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다(Tomasi, 2012b).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이러한 통합을 토마시는 시장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다(Tomasi, 2012a). 즉 시장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결합시키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효율성이나 자기소유라는 원리에 기초하기보다는 시장민주주의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 간주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삶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승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능력을 계발하고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권리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필요로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삶의 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장민주주의는 사회정의에 대한 개념을 수용한다.

#### IV. 시장민주주의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평가

토마시에 따르면,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부터 사회정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자의 결합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크게 사회민주적 방식과 시장민주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사회민주적 방식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의해 추구된 것인 반면,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시장민주적 방식을 옹호한다고 주장함으로써(Tomasi, 2012a) 현실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토마시에 따르면,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는 시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부 개입을 옹호하는 제도적 편향을 보이고 있다(Tomasi, 2012a).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시장 분배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사회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는 분배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는 시민들이 경제 영역에서 가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크지 않다고 믿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시민들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부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고, 적극적인 정부의 분배 역할에 반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시장민주

의적 접근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워진다. 다만 토마시가 이러한 제도를 옹호하는 이유는 효율성, 효용, 자연권 등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일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권리가 될 경우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제한된다고 비판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관료들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개인의 경제적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토마시가 보기에 이것이 경제 규제의 힘이 약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Tomasi, 2012a).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시장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적 힘이 발휘되는 곳은 위험 물질 통제, 국방, 도로와 같은 진정한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분야이며, 단순한 규제보다는 시장지향적 해법을 추구한다. 물론 시장민주주의 체제도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회균등을 위해 교육에 세금을 기초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바우처 제도를 선호하며,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보다는 민간-공공 파트너십 시스템을 선호한다(Tomasi, 2012a).

시장민주주의는 시장이 잘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한다. 재산권 정의, 계약 이행 뿐 아니라 금융업 등에서 나타나는 사기와 기만을 막기 위한 경제적 모니터링, 통화정책의 책임 등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활동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 경제 활동 영역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일률적인 최저임금, 작업시간 제한, 작업장 위생 규제 등에 대해 시장민주주의는 반대한다(Tomasi, 2012a).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노동시간/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시장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규제가 포괄적으로 필요했던 시기는 산업화 초기 단계로 현대와 같은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시민과 근로자의 협상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온정주의적 개입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 토마시의 주장이다(Tomasi, 2012a).

그런데 시장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효율성, 효용 등 때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적 시민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해독제'라는(Tomasi, 2012a)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지향적인 제도를 옹호하는 이유에 효율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차등의 원칙에 대한 토마시의 해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토마시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작동하는 것이지만 차등의 원칙 단독으로는 불평등의 정도에 대해 어떠한 상한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시민은 부의 불평등 속에서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설령 부의 축소를 가져온다고 해도 작업장과 생산자산의 민주적 통제의 경험에 특별히 가중치를 부여하는 반성장주의적 성격의 사회민주적 접근과 달리, 시장민주적 접근은 최소수혜자의 개인적 부가 극대화되는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omasi, 2012a).

사회민주적 체계는 차등의 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초 소득을 보장하고 교육, 문화체험, 직업훈련, 의료 등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계급이 고착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과 유산에 대한 급격한 누진세, 생산수단의 공공소유, 기업 간 경쟁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반면, 시장민주주의는 기초 소득이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보장하지만 차등의 원칙을 재분배의 원리로 보지 않는다. 시장민주주의는 사적인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최소수혜자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로부터 토마시는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부여하는 시스템은 생산을 가장 잘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최소수혜자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확언은 상호성의 민주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Tomasi, 2012a). 즉 시장민주주의는 시장 사회의 성장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최소수혜자의 소득도 증가하므로 시장민주주의가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민주주의적 체제가 경제성장을 저하시켜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처럼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었을 때, 시장민주주의적 제도하에서 과연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무

난히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앤더슨(Anderson, 2012)은 경제적 영역에서는 많은 외부성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규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앤더슨의 주장은 경제적 자유가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 등과 같은 다른 기본적 자유와 달리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지적은 핵심을 비켜간다. 토마시 역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기본적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즉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라고 하더라도 도덕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체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권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는 얼마든지 규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경제적 자유가 규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만(Freeman, 2012)은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결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시도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은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고 비판한다. 롤즈의 정의의 제1원칙의 특징은 기본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시는 최소수혜자로서의 이점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기본적 경제적 자유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 자유는 그 속성상 경제적 효율성이나 공공재 공급의 필요성 등과 같은 이유로는 제한될 수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공공교육, 공공의료, 실업급여, 노인연금 등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들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나아가 가격담합 금지나 독점 규제 등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공정성은 물론이고 시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것도 기본권으로서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로 인정된다면, 토마시의 의도와 무관하게, 현대의 거의 모든 자본주의에서 당연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도 인정되는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단들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 되며, 결국 토마시의 시장민주주의는 자유지상주의로 귀결된다(Freeman, 2012).<sup>3)</sup>

3) 이와 관련하여 버만(Berman, 2013)은 전통적으로 시장과 사회정의의 갈등은 꾸준

이러한 비판 역시 토마시가 경제적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견 과도해 보인다. 예를 들어 토마시는 독점이나 담합 등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자유시장 공정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 자유를 정의의 제1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면(Tomasi, 2012c), 많은 최소수혜자들의 물질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사회보장 정책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어떤 외적 기준에 따라서 부의 분배를 시정하기 위한 과세는 (Tomasi, 2012a, p.112)” 허용될 수 없다는 토마시의 주장처럼 차등의 원칙에 따른 경제적 규제나 재분배 정책은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마시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헌법으로 보호하는 시장민주주의는 “최소수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Tomasi, 2012a, p.266)”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한 기본적 자유라는 정의의 제1원칙이 차등의 원칙을 포함한 제2원칙에 대해서 우선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격상되는 데 따른 비용은 최소수혜자의 물질적 부의 감소일 수 있다는 점을 토마시는 간과하고 있다(Wall, 2013). 왜냐하면 기본적 자유가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기본적 자유가 차등의 원리에 의해서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차등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분배정책과 사회보장 정책은 이로부터 기본적 자유가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정당하다. 따라서 시장민주주의는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면 조세를 통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장민주주의가 차등의 원칙을 더 잘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

히 제기되어 왔고,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 자유주의 사상의 주된 논의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시는 정치이론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사회정의와 자유의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그의 주장은 자유지상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시장민주주의하에서 최소수혜자의 처지가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가 더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것이며, 제3세계의 빈민들은 불평등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 것(Brennan and Tomasi, 2012)”이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대신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의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최선의 도덕적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정치적 자유에서의 불평등 심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시장민주주의적 정책은 ‘정치적 자유의 공정한 가치’라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Stilz, 2014).

한편 앤더슨(Anderson, 2012)은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정치이론을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만 구분함으로써 기업의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한다. 즉 이론적 차원에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기업과 경제 주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으로서 시장민주주의는 의미를 갖지만, 제대로 된 수정을 위해서는 기업과 같은 권위적인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앤더슨에 따르면, 토마시의 정치스펙트럼에는 보수주의가 빠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의 적이었고 사회적 위계, 권위주의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들도 시장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지만, 그 의미는 공적인 정부가 사적인 정부에 행사하는 힘을 제한하자는 것으로 사적 정부가 자유롭게 권위를 누리게 위함이었다. 토마시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에 방해가 되는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 작업장 민주화 등 노동문제에 대해 특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로 권위주의적 사적 정부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앤더슨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허용한다면 경제주체들은 국가 권력이 아닌 사적 권위에 종속될 것이고, 이는 토마시의 말하는 자율적 시민이라는 도덕적 능력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토마시는 사적 기업은 본질적으로 위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적인 기업의 위계가 갖는 위험성 때문에 경제적 자유가 규제되어

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임금노동의 폐지,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Tomasi, 2012d).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토마시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아존중이 약해질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의 삶의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시민들이 외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적 권력으로부터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그리고 기업과 기업 등 사적 영역에서의 자율성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자유가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사적인 영역에서 시민들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자유들 역시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설사 기업을 비롯한 자본주의의 사적 영역이 본질적으로 위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능력의 실현을 강조한다면, 사적 영역에서도 그러한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경제적 민주주의, 특히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시장민주주의의 입장과 관련된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공적 영역에서의 평등한 정치적 권력의 문제라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권력에 대한 보다 민주적인 통제와 관련된다. 그렇다면 시장민주주의가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러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권리 역시 기본적인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는 시장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나 재산소유 민주주의보다 자율적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을 더 잘 보호할 것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의미를 갖는다.

## V. 작업장 민주주의와 경제적 효율성

통상적으로 물츠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어떤 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동등한 권리도 정의의 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는 페퍼(Peffer)의 주장에 대해 롤즈는, 이것은 경제 조직이 사회주의적 형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정의에 대한 이론은 특정 생산수단 소유방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Rawls, 1993, pp.7-8).

이에 대해 경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통제가 반드시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의가 어떤 소유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지만, 사회정의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단지 특정 소유시스템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들어 롤즈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업 이외에 다른 조직체에도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장 민주주의만 도덕적 능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롤즈적 의미의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O'neil,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롤즈의 입장과 무관하게, 작업장 민주주의를 경제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원리는 기업 내부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달(R. Dahl)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업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능력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만약 사람들이 기업에서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면 민주적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능력을 상실하고 자율적 주체로서의 능력에 손상을 받게 되므로 기업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토마시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라는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의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경제적 자유의 범위에는 이러한 작업장

에 대한 더 민주적인 통제권과 더 많은 의사결정권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즉 토마시가 말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에는 이러한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사회민주적 권리들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마시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규제, 작업장 민주주의 등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이는 토마시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에는, 기업 내에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참여권과 같은, 사회민주적 권리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토마시가 보기에, 차등의 원칙에 대한 사회민주적 관점은 “우월한 작업장에서의 경험 때문에 ...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더 큰 부(Tomasi, 2012a, p.187)”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토마시의 주장은 시장민주주의적 사회에서의 경제적 자유가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에서보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등의 원칙을 더 잘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반면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성장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논점을 벗어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쟁점은 어떤 체제하에서 경제적 자유가 더 많은 소득을 가능하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으로서의 정의의 제1원칙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인 자유이고, 또한 경제적 자유에 작업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더 많은 소득을 위해 경제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사회민주적인 경제적 자유는 기본적인 자유로 인정될 수 없다면, 시장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는 자본주의적 권리로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는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거나 생산적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능력에 중요하다. 이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그 외의 다른 경제적 자유들, 예컨대 작업장 민주주의와 같은 비자본주의적 경제적 권리들 역시 자율적 주체라는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라면 기본적 자유로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경제적 예외주의에 대한 토마시의 비판은 롤즈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적인 자산소유의 자유 이외의 다른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왜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자유 이외의 다른 경제적 자유들은 왜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없는지를 토마시는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토마시의 입장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며, 작업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경험보다는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Tomasi, 2012d) 주장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더 많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자유만이 기본적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가치는 경제성장, 즉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장민주주의가 이러한 기준에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에 사회민주적 권리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정의의 제1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시장민주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는 이제 더 이상 평등한 기본권이라는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도덕적 이상은 사실상 수사(rhetoric)에 불과할 뿐, 시장민주주의는,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효율성에 대한 주장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시는 자본주의적 경제적 자유만을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자본주의적인 경제적 자유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즉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토마시의 주장에는 효율적인 시장 관계가 경제적 자유의 행사의 결과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Freeman, 2012).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시장민주주의는 최소수혜자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민주주의가 차등의 원칙을 더 잘 충족시켜줄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가정될 수 없다. 즉 시장민주주의가 최소수혜자의 생활수준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는 경험적인 문제인 것이다. 경제적 자유를 기본권으로 격상시켜서 규제나 재분배의 합법적인 범위를 축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시장민주주의는 정부의 실패가 시장의 실패보다 클 것이라고 단지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정에는 시장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불신은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시장민주주의의 인식과 그에 따른 국가의 강제에 대한 동의 혹은 정당화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가우스(Gaus, 2010)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라는 개념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정당화된 자유주의(justificatory liberalism)'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핵심은 공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강제가 개별 주체들에게서 어떻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을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로서 인정하려면 공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강제는 정당화되어야 하며, 강제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정당화의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높은 세율, 강력한 재분배 정책 등은 낮은 세율, 소극적 재분배 정책에 비해 더 많은 강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당화된 자유주의는 강제적 국가와 양립하기 힘들다. 즉 국가가 재분배 정책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롤즈적인 사회민주주의는 정당화된 자유주의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고, 정당화된 자유주의는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마시에 따르면, 이미 현대의 자본주의는 과거와 달리 노동에 대한 자본의 일방적 지배에서 벗어나 전문화되고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Tomasi, 2012a). 예컨대 이제는 중산층에서도 사회복지보다 오히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온정주의적인 정부의 개입은 더 이상 현대 자본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다면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장민주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적 영역에서 행해지는 국가의 강제에 대해서 반대한다.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결합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한다. 높은 세율과 강력한 재분배, 노동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에는 국가에 의한 높은 수준의 강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라는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 동의되지 않은 국가에 의한 개인 권리의 침해 뿐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

등이 야기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를 위해 경제적 자유가 기본권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라는 이상에 반하여 국가의 강제와 위계에 의한 사적 강제 중 어느 것이 더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더구나 실제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부를 부자들에게 이전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볼 때, 국가에 대한 토마시의 불신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 VI. 결론을 대신하여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간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롤즈의 경제적 예외주의를 비판하면서 롤즈가 말하는 도덕적 능력의 계발과 행사라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사회정의가 시장 과정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통합을 시장민주주의로 칭하고 있다. 시장민주주의는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며, 이는 최소수혜자의 물질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의 요구를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자유 시장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정의에 대한 최선의 도덕적 해석이 된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그러나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하는 시장민주주의의 시장 지향적 정책과 제도는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한다. 우선 광범위한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를 통한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약함으로써, 시장민주주의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소수혜자의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더구나 시장민주주의는 불평등의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으로 정치적 권력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유가 시민들의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들의 도덕적 능력에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면, 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등과 같은 사적 영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시장민주주의는 사적 정부로서의 기업의 위계가 낡는 또 다른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삶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과 관련된다.

작업장 민주주의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기업을 보다 더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신고전적 자유주의는 작업장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민주적 권리는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는 단지 자본주의적 자유로 국한되며, 기본적 자유는 더 이상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닌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도덕적 능력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은 단지 수사에 불과할 뿐, 이들의 주장은 효율성 주장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민주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기본적 자유로 격상시키는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통합이라는 신고전적 자유주의 시도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기 힘들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민주주의의 시도는 최근 한국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정의에 대한 요구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면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 모두에서 경제적 자유는 여전히 자본주의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를 이처럼 자본주의적 의미로 국한시킨다면,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화해는 쉽지 않다는 것은 시장민주주의의 실패가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적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 삶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양립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즉 경제적 자유가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들의 도덕적 능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반드시 자본주의적 개념으로 국한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권리나 작업장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과 같은 권리들이 책임 있는 자율적 주체로서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들 권리 역시 경제적 자유로 포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라는 사회적 가치가 공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조우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자율적 주체들에게 필요한 도덕적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강제의 정당성이라는 문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에 의한 공적 강제와 사적인 위계에 의한 강제 중 무엇이 더 해로울 것인가는 선형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무엇이 더 해로울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작업이 요구된다. 어쩌면 이 문제는 다시 국가와 시장이라는 다소 진부할 수 있는,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 삶이라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정의라는 두 가지 축은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성과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투고 일자: 2015. 5. 27. 심사 및 수정 일자: 2015. 6. 16. 게재 확정 일자: 2015. 6. 17.

#### ◆ 참고문헌 ◆

- 김상조 (2012),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 재벌,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96호, pp.112-140.
- 邊衡尹 (1988), “經濟民主化의 課題,” 『經濟學研究』, 제36권 제1호, pp.271-273.
- 신광식 (1996), “경제민주화를 위한 산업조직정책,” 『연세경영연구』, 제32권 제2

- 호 별책, pp.125-154.
- 신석훈 (2012), “기업이론 관점에서 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제도와 경제』, 제6권 제3호, pp.49-78.
- 로버트 달 (2011), 『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 후마니타스(배관표 역).
- 이제민 (1994), “경제 민주화의 배경과 방향,” 『연세경영연구』, 제31권 제2호, pp.79-123.
- 조우현 (1994), “경제민주화를 위한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제도,” 『연세경영연구』, 제31권 제2호, pp.137-146.
- 존 롤즈 (2003), 『정의론』, 이학사(황경식 옮김).
- 홍 훈 (1994), “경제민주화의 사상적 배경,” 『연세경영연구』, 제31권 제2호, pp.13-77.
- Anderson, E. (2012), “Recharting the Map of Social and Political Theory: Where is Government? Where is Conservatism?,”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Brennan, J. and J. Tomasi (2012), “Classical Liberalism,” in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hilosophy*, Estlund, D.(ed.), Oxford University Press, pp.115-132.
- Berman, S. (2013), “Review Symposium: Free Market Fairnes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5, No. 2.
- Freeman, S. (2012), “Can Economic Liberties Be Basic Liberties?,” in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Gaus, J. (2010), “Coercion, Ownership, and the Redistributive State: Justificatory Liberalism’s Classical Tilt,”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7, pp.233-275.
- Gordon, D. (2012), “Review: Free Market Fairness,” *The Mises Review*, Vol. 18, No. 1.
- Hayek, F. A. (1960), *The Constitution of Liber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76), *Law, Legislation and Liberty II: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Routledge.
- \_\_\_\_\_ (1988), *The Fatal Conceit: The Error of Socialism*, Routledge.
- Koppelman, A. (2012), “Review: Free Market Fairness,” *Notre Dame*

*Philosophical Review.*

- Mill, J. S. (1996),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Routledge.
- Nickel, J. (2000), "Economic Liberties," in *The Idea of Political Liberalism: Essays on Rawls*, Davion, V. and C. Wolf(eds.), Rowman & Littlefield.
- O'neil, M. (2008), "Three Rawlsian Route toward Economic Democracy," *Revue de Philosophie Economique*, Vol. 9, No. 1, pp.29-55.
- Platz, J. (2013), "Are Economic Liberties Basic Right?,"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pp.1-22.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midtz, D. and J. Brennan (2010), *A Brief History of Liberty*, Blackwell.
- Tomasi, J. (2012a), *Free Market Fairnes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12b), "Democratic Legitimacy and Economic Liber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Vol. 29, No. 1, pp.50-80.
- \_\_\_\_\_ (2012c), "Reply to Samuel Freeman: Thick Economic Liberty,"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_\_\_\_\_ (2012d), "Reply to Elizabeth Anderson: Part II, Workplace Democracy," *Liberalism, Libertarianism, Social Justice Symposium on Free Market Fairness*.
- Stilz, A. (2014), "Is the Free Market Fair?," *Critical Review*.
- Wall, S. (2013), "Self-government, Market Democracy, and Economic Liberty,"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39, No. 3, pp.522-534.

# Economic Liberty and Social Justice: A Critical Review on Neoclassical Liberalism

Jaehong Hwang\* · Pil Kyoo Jo\*\*

## Abstract

Neoclassical liberalism refers to the recent movement of liberalism toward the integration of classical liberalism and egalitarian liberalism. While, like classical liberalism, neoclassical liberalism holds that economic liberties should be recognized as basic rights, it attempts to morally justify economic liberties in terms of egalitarian liberalism. Neoclassical liberalism emphasizes social justice and argues for the efficient achievement of social justice through market forces. However, it suffers some problems that, if thick economic liberties are accepted as basic liberties, the difference principle is not necessarily satisfied since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ocial safety net programs are limited, and neoclassical liberalism is reduced to the efficiency argument. Nevertheless, we believe that economic liberties and social justice might be successfully integrated if economic liberties are identified with the moral power of responsible self-authorship thus the scope of economic liberties is newly interpreted.

**KRF Classification : B030102**

**Key Words : neoclassical liberalism, economic liberty, social justice, market democracy**

---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Mokwon University. e-mail: zootjhong@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bat National University. e-mail: jopk@hanbat.ac.kr